

# 02 디자인 보호법이란?

## 2.2 디자인 보호법제 소개

### 상표법

#### 보호대상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 (표장)으로 그 표장을 보호



#### 권리취득 방법 및 보호 기간

상표등록출원, 설정등록 후 10년 (갱신가능: 반 영구적인 보호 가능)

- >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 독점과 타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 행사 가능
- > 침해자에 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

#### 주요제도

##### 갱신제도

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이지만 갱신을 통해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반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 불사용취소심판제도

상표권을 취득한 이후에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등록 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2.2 디자인 보호법제 소개

### 저작권법

#### 보호대상

물품과 구분된 독자적인 미적 표현을 보호

마시마로(캐릭터자체) 보호가능 물품+마시마로 >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후 디자인권 실시 가능



#### 권리취득 방법 및 보호 기간

무방식(창작과 동시), 사후 50년

- > 저작권(공표권, 동일성 유지권, 성명표시권)
- >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보호(모방금지권), 복제권, 배포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부여
- > 침해자에 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

#### 주요제도

##### 업무상 저작물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기업이나 단체가 저작자가 되는 경우를 '업무상저작물' 이라고 한다. 이 때 저작권재산권 뿐만 아니라 저작권권도 법인에 귀속되고 저작물이 공표된 후 50년간 보호된다. 업무상저작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을 것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것
3. 그 저작물이 업무상 작성된 것
4. 법인 등의 이름으로 공표될 것
5. 계약 또는 근무규칙으로 다른 정함이 없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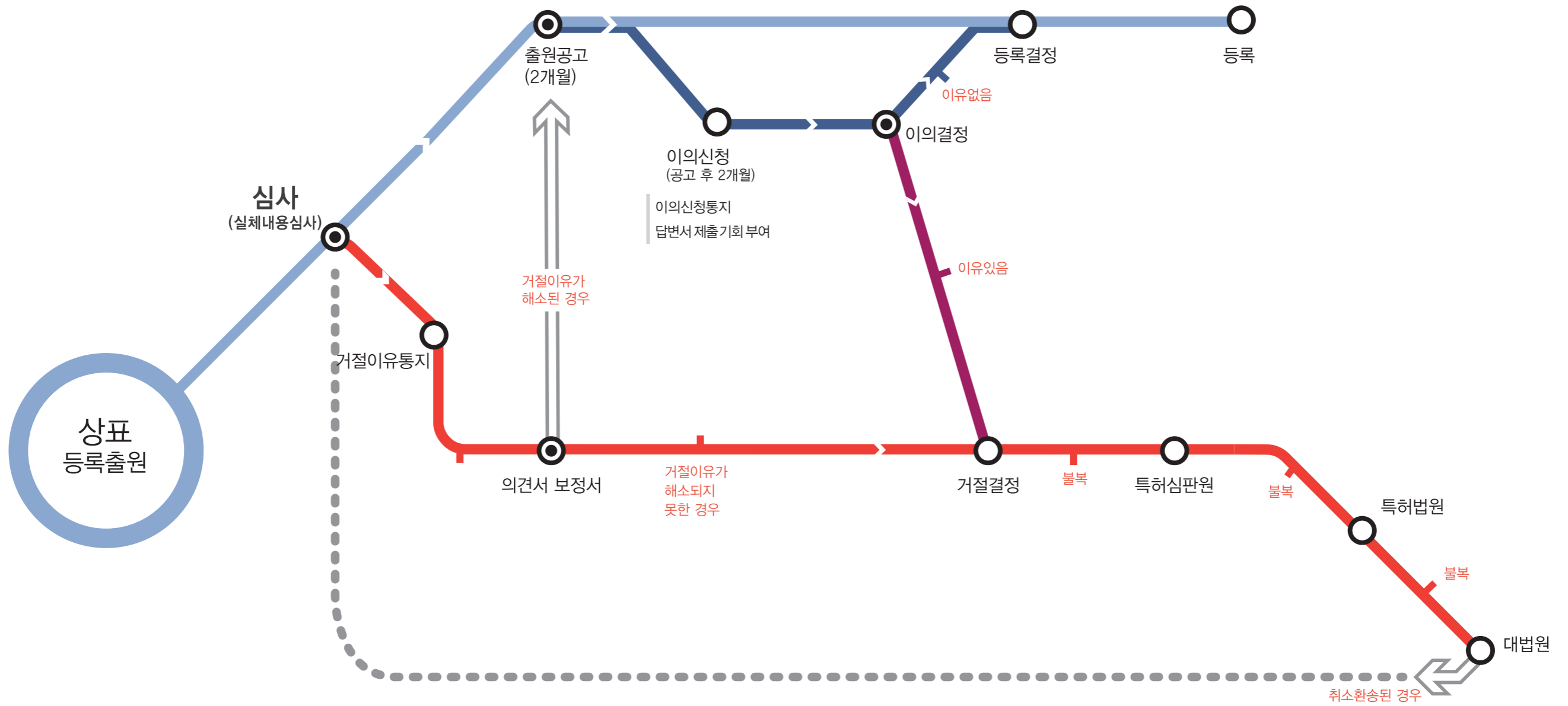
# Step 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 04 법제별 출원가이드

## 4.2 상표법상의 상표등록 절차도



# 04 법제별 출원가이드

## 4.2 상표법상의 보호대상 및 등록요건

### 성립요건

- 기능** 자신의 상품(서비스 등)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출처표시
- 구성**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의 결합
- 종류** 상표, 서비스표 (무역업 등 서비스업)  
단체표장 (동종업자의 공동사용)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보성녹차, 전주비빔밥 등)  
업무표장 (비영리업무 수행단체)

### 등록요건

- 식별력** 다른 제품의 상표와 구별될 수 있어야 함  
 식별력 없는 예   
 보통명칭  
 현저한 지리적 표시
- 선출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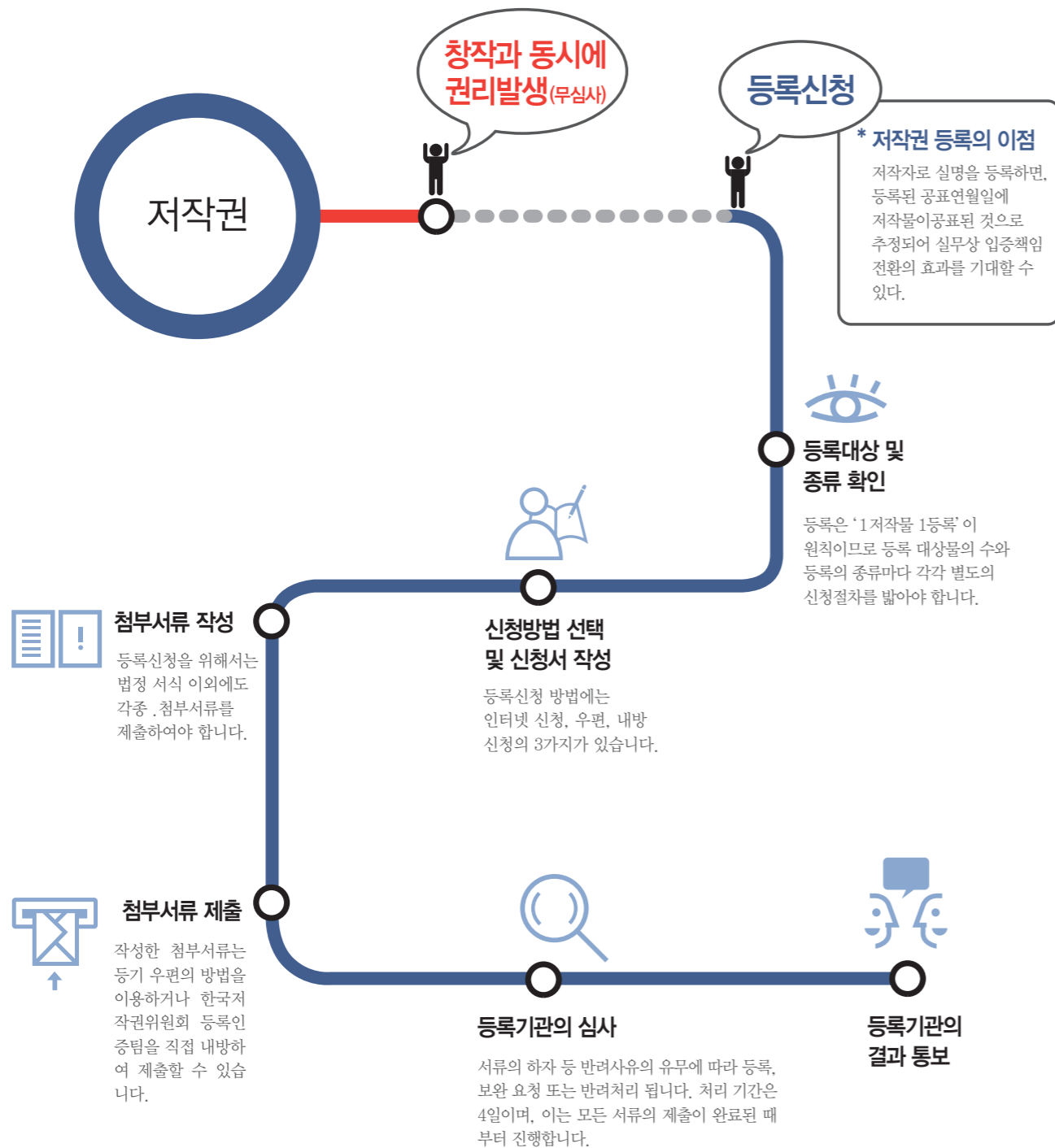
###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브랜드디자인)

- 1 국기·국장·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저명한 국제기관 명칭, 공공기관의 감독용·증명용 인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IMF, WTO 등)
- 2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양키, Negro 등)
- 3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YMCA, KBS, 적십자 등)
- 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 5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 DJ, JP, 한전, 주공 등)
- 7 타인의 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ZYPREX와 JAYFLEX, CASTILLON과 CASTILLE, CAMPRAL과 아캄프랄, SUNRIDER와 SUNRISE, NOVEC과 NOVEL, 남북통일과 통일, MAGIC DUNK와 SLAMDUNK/슬램덩크, BOBOLI와 BOB LEE 등)
- 8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9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1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 13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표장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 14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 15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



# 04 법제별 출원가이드

## 4.3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등록절차도와 보호대상



## 성립요건

인간의 사상과 감성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로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정도면 충분함

응용미술저작물의 경우,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됨

## 등록요건

무심사주의 (창작과 동시에 권리발생)

## 4.4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대상 및 요건

### 성립요건

비등록주의이며 무심사주의로 제3자의 디자인 사용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규정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호

### 부정경쟁 행위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 등에 대한 혼동행위와 희석행위

# 05 개발 결과물별 보호가이드

## 2D / 시각디자인

보호필요성

- 반드시필요 ●
- 필요 ●
- 약간필요 ○
- 필요없음 ✕

### 인쇄매체 광고디자인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 ○  
 저작권법 ●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분류코드 F3-33 [광고지 등]  
 물품명칭 예) “광고전단”  
 >> 무심사등록/복수디자인등록 대상

**상표법**  
 >> 출처표시의 기능을 하는 문자, 기호, 도형, 입체적인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부분은 상표법상 보호대상  
 >> 광고전단에 포함된 “현대중공업” 과 도형은 상표법상 보호대상

**저작권법**  
 >> 미술저작물/사진저작물로 보호 가능



### 타이포그래피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 ✕  
 저작권법 ○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분류코드 N1 [글자체]  
 물품명칭 예) “한글글자체”  
 >> 한 세트 글꼴 전체로서 등록 가능

**저작권법**  
 >> 글자꼴 자체는 보호 불가  
 단, 서예작품은 미술저작물로 보호 가능  
 >> 글자꼴 프로그램 (font file)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 가능

가 각 간 갈 감 갓 강 갖 갈  
 개 갯 거 건 걸 겁 것 게 췌  
 겨 격 겪 견 결 췌 경 계 고  
 끝 콧 궁 과 관 괴 구 국 군  
 끝 궁 귀 그 크 근 글 림 립  
 기 길 김 김 깃 따 팍 팔 팡  
 깨 구 곤 꿈 꿔 꿔 꼬 끷 끝  
 미 민 밍 나 단 날 남 닳 냇  
 닳 닳 날 내 낸 델 뎀 뎀 냇  
 뎛 뎛 날 내 낸 델 뎀 뎀 냇  
 뎛 뎛 노 논 뎛 뎛 뎛 뎛 뎛  
 드 는 들 니 닌 밍 립 다 뎛



### 리플렛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 ○  
 저작권법 ●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분류코드 F3 [사무용지등]  
 >> 무심사등록/복수디자인등록 대상

**상표법**  
 >> 출처표시의 기능을 하는 문자, 기호, 도형, 입체적인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부분은 상표법상 보호대상

**저작권법**  
 >> 디자인은 미술저작물로 보호 가능  
 >> 판권권 인정되지 않으므로 편집방식은 보호 불가

### CI/BI 디자인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 ●  
 저작권법 ○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분류코드 F3-30 [인쇄물]  
 물품명칭 예) “라벨” 등으로 화체되어야 함  
 >> 무심사등록/복수디자인등록 대상

**상표법**  
 >> 출처표시의 기능을 하는 문자, 기호, 도형, 입체적인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부분은 상표법상 보호대상  
 >>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지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표법상 보호대상

**저작권법**  
 >> 미술저작물로 보호 가능



### 캐릭터 디자인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 ●  
 저작권법 ●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분류코드 F3-30 [인쇄물]  
 물품명칭 예) “라벨”  
 >> 상품화하는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보호받을 수 있음  
 >> 무심사등록/복수디자인등록 대상

**상표법**  
 >> 출처표시의 기능을 하는 문자, 기호, 도형, 입체적인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부분은 상표법상 보호대상  
 >> 동 표지를 출처표지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표법상 보호대상

**저작권법**  
 >> 미술저작물로 보호 가능



### 텍스타일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 ○  
 저작권법 ●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분류코드 M1 [직물지, 판, 끈]  
 물품명칭 예) 직물지  
 >> 무심사등록/복수디자인출원 대상

**상표법**  
 >> 출처표시의 기능을 하는 문자, 기호, 도형, 입체적인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부분은 상표법상 보호대상  
 >> 동 표지를 출처표지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표법상 보호대상  
 >> 유명상표를 패턴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

**저작권법**  
 >>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 가능  
 >> 디자인 자체가 텍스타일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함



# 06 개발 프로세스별 보호가이드

디자이너들은 보다 창의적이고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디자인을 창출하기 위해 각각의 진행 단계 마다 수많은 중간 결과물들이 나타나고 이들은 최종결과물로 완성된다. 이렇게 중간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에 대한 보호방법과 이들의 법적 보호장치와 그 객체를 사례로써 제시한다.

## 6.1 브랜드 및 패키지디자인 프로세스 (Brand & Package Design Process)

결과물

보호장치 및 방법

### 1. 브랜드컨설팅과 브랜드전략

- 키오프 미팅
  - 입원/실무진 심층인터뷰
  - 브랜드진단
  - 국내외경쟁사 사례분석
  - 마케팅 믹스
  - 브랜드 포지셔닝
  - 디자인 이미지맵
- 회이력
- 리포트
- 저작권(등록)

### 2. 네이밍 / 브랜드슬로건 제작

- 브랜드컨셉 수립
  - 국내외 경쟁브랜드 조사
  - 경쟁브랜드네임분석
  - 네임발상
  - 자연어 수집/합성어 연구 조어탐구
  - 발상안 스크리닝 일반검색실시
  - 변리사 법적 타당성조사
  - 우수 후보안 평가조사작성
  - 압축후보안 재정의
  - 최종안 선정
  - 출원
- 리포트
- 저작권(등록)
- 브랜드명(상표)
- 상표등록출원
- 브랜드명(상표)

### 3. 브랜드 시각화작업 및 응용안 제작

- 로고 및 사운드개발
  - 서식류
  - 총무용품
  - 간판류
  - 프로모션 품목
- 로고
- 상표등록
- 대소 봉투, 레지, 팩스용지 등
- 우송지, 기프트카드
- 옥외광고판, 입구판, 현수막 등
- 컵, 쇼핑백, 리셔츠 등
- 디자인등록출원

### 4. 패키지 디자인

- 경쟁제품조사
  - 문헌, 인터넷, 시장 조사
  - 디자인컨셉 설정
  - 디자인개발
  - 디자인안 선정 및 재정리
  - 임직원 및 소비자반응조사
  - 최종안 결정
  - 용기 디자인
  - 라벨디자인
  - 파우치디자인
  - 선물세트디자인
  - 받침과 지지구조개발
  - 선물세트상자디자인
  - POP디자인
- 리포트
- 스케치
- 리포트
- 리포트 및 렌더링
- 용기 디자인
- 라벨디자인
- 파우치디자인
- 선물세트디자인
- 디자인등록출원
- 디자인등록출원
- 특허, 실용신안등록출원
- 디자인등록출원

### 5. 그래픽 기준안 개발

- 매뉴얼 기획 및 편집
  - 데이터 수록
  - 발간
- 리포트
- 매뉴얼제작
- 저작권 등록 및 디자인등록출원

### 6. 완료보고

- 최종성과물납품
  - 인쇄제작 감리
- 리포트
- 저작권(등록)

# 06 개발 프로세스별 보호가이드

## 6.4 캐릭터디자인 프로세스



### 1. 캐릭터 현황 및 유사 사례 조사

- 킵오프 미팅  
임원/실무진 심층인터뷰
- 시장 현황 분석  
캐릭터 분석(기 존재시)  
국내외 캐릭터 사례 조사  
국내외 캐릭터 사례 분석  
캐릭터 포지셔닝

### 3. 캐릭터 기본형 디자인 개발

- 디자인 시안  
디자인 타당성 회의 저작권 (등록)
- 디자인 스크리닝 일반검색실시
- 우수 후보안 평가  
압축 후보안 도출 저작권 (등록)
- 임직원 및 소비자 반응조사
- 최종안 선정
- 출원

### 5. 캐릭터 기준안 개발

- 매뉴얼 기획 및 편집
- 데이터 수록
- 발간

### 2. 조사 분석 및 개발 방향, 전략

- 주요 이슈 도출
  - 개발방향
    - 아이덴티티 전략
    - 홍보 마케팅 전략
  - 캐릭터 개발 전략
    - 기본형
    - 응용형
    - 특수 응용형
    - 다양한 응용요소 개발
    - 입체 조형물 제작 기준 개발
    - 상품화 제작 디자인 방향 개발
    - 미디어 적용 기준 개발
    - 스토리 개발
    - 캐릭터 홍보 방안
    - 캐릭터 디자인 포지셔닝
- 저작권 (등록)

### 4.1 캐릭터 응용형 개발

- 기본형 제작
  - 특수응용형 제작
  - 테마별응용형 제작
  - 스토리 개발
- 디자인등록출원  
 상표등록가능  
 저작권 (등록)

### 4.2 캐릭터 홍보 및 마케팅 방안

- 잡지 등 활자매체
  -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 TV 등 공중파 마케팅
  - 프로모션
- 홍보동영상까지 제작할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

### 6. 완료보고

- 최종성과물납품
- 제작 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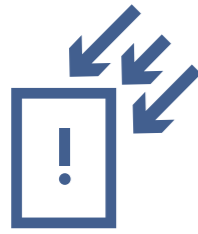




# Step 3

디자인창작물에 대한  
분쟁 예방가이드

# 09 구제방안



## 자신의 디자인을 침해당하는 경우

### 경고장

####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디자인이 자신의 등록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외관상 동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다.

#### 소송의 이용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디자인보호법은 손해액의 추정 및 과실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형사제도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형사상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 침해의 경고장을 받은 경우

### 첫째,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

본 가이드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체크하여, 해당하는 반박사항을 정리하여 답변서를 보낸다.

### 둘째, 심판제도의 이용

#### 무효심판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디자인의 등록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한다.

####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자신의 사용디자인이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동일 유사한 디자인이 아닌 경우)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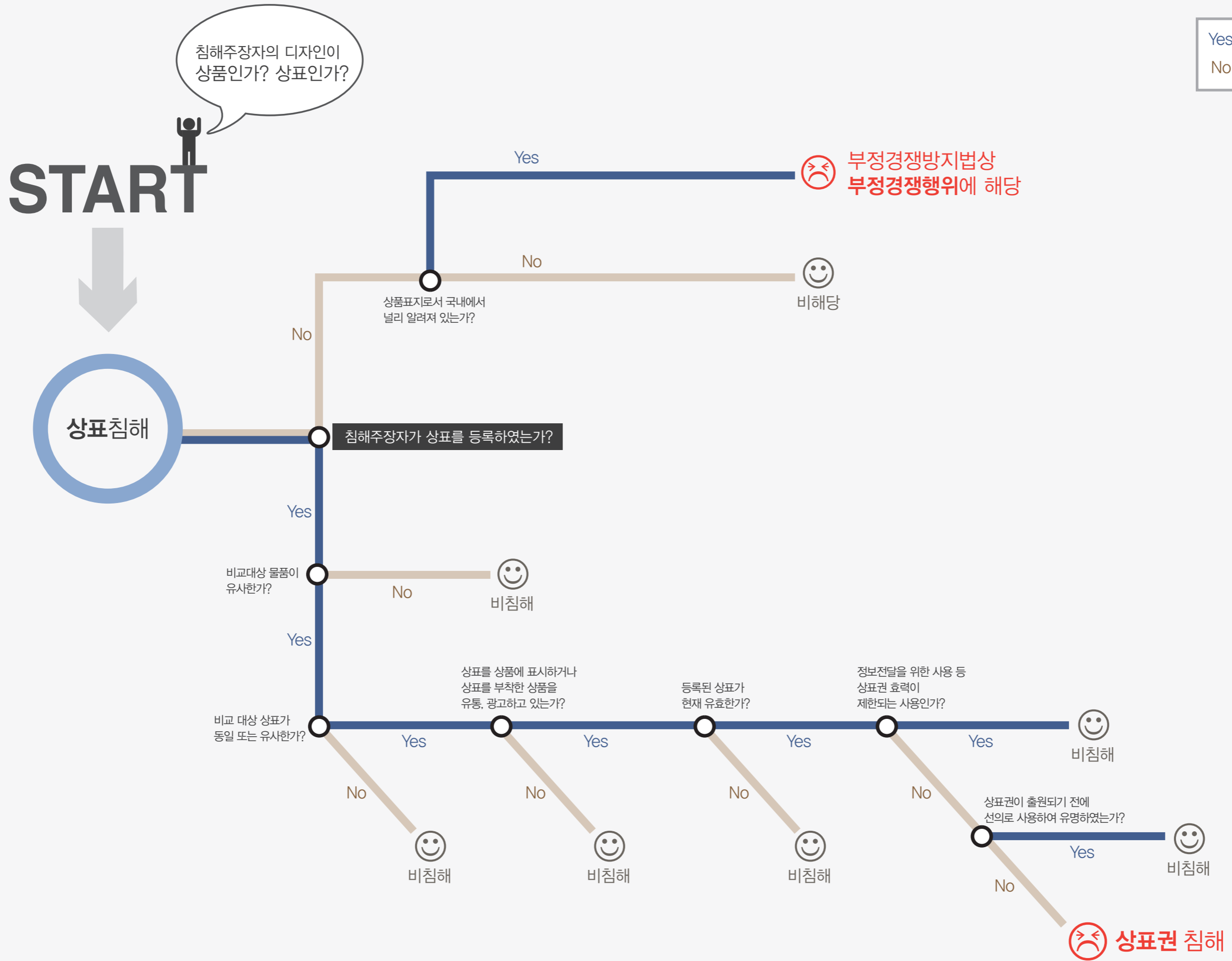
#### 소송외 분쟁 해결방안의 이용

협상이나 중재 등을 통하면, 일반적으로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내에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신청비용이 무료이며, 합의에 의한 조정 조서가 작성되고, 민법상 화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침해의 경고장을 받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본 자가진단을 체크하여 디자인 침해 및 피침해를 판단하여 보세요. 본 페이지의 저작권을 제외하고 상품과 상표로 나누어 참고하시고 상품침해 체크리스트가 필요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상표침해 체크리스트가 필요하시면 60페이지로 가세요.







# Step 4

거래질서  
확립가이드

# 10 디자인 용역 계약 표준 계약서

## 10.5 불공정조항의 유형

### 지식재산권의 소유 문제 -3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당연한 조항이나, 디자인분야의 경우 경쟁에 의해서 낙찰된 업체의 디자인 뿐만 아니라 탈락한 업체의 디자인 중에서 일부를 변형하여 사용할 것을 강요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본 “개발결과물”이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을”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갑”은 모든 책임 비용부담으로부터 면책시켜야 한다.



**(개선)**  
본 “개발결과물”이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관리책임과 개발책임으로 구분하여 침해 책임을 지며, “갑”과 “을”의 책임 분담 비율대로 비용을 부담하여 해결해야한다.

### 지식재산권의 사용으로 인한 대가 지급 문제

현재의 업무를 핑계로 디자이너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조항이다. 현재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이라면, 그에 준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현재)**  
사후에 “개발결과물”의 개량기술에 대해서 “을”은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소유는 “갑”에 있다.



**(개선)**  
사후에 “개발결과물”의 개량기술에 대해서 “갑”과 “을”은 기술개발 참여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며, “을”은 “갑”에게 대가를 지불 받고 기술을 공급하며, 그 소유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 10 디자인 용역 계약 표준 계약서

## 10.6 디자인 용역 표준 계약서

###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 주 처		
	계약상대자	상호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전화번호 :	
계약내용	계약건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 : VAT 포함	
	계약보증금	일금                      원정 (                      ) : 계약금액의                      %	
	지체상금율	1일 0.25% (국가계약법 지체상금을 적용)	
	계약기간	20 . . . ~ 20 . . . (계약일로부터 일간)	
	착수기간	20 . . . ~ 20 . . . (착수일로부터 일간)	
	기타 사항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 디자인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20 . . . . .

“갑” 발주처 (계약자)

“을” 계약상대자

상 호 :

상 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 디자인 용역(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발주한 “○○ 디자인 용역(개발)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계약 업무를 이행하여 갑에게 공급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하에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사용 언어)

- ① 디자인 용역 계약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글을 우선하여 사용하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한글과 병행하여 외국어를 표시 할 수 있다.
- ② 외국어와 병행하여 표시된 부분이 한글과 해석상 상이한 경우에는 한글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키로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아래 관련법을 따른다.
- ① 디자인 관련용어 :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용어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에는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을 적용한다.
  - ② 계약 관련용어: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당사자간 계약서, 회계규정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 ③ 기타 용어 : 상법 및 민법 등 관련 법률 용어 정의에 따른다

제 4 조 (디자인 개발 용역의 과업 범위)

- ① 갑과 을은 계약하는 디자인의 내용, 업무범위에 따른 계약금액, 투입 인력, 납품기간 및 장소, 검사 방법 및 시기, 위탁내용의 이행 등과 관련된 과업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 디자인 용역 (예시)
  2. 상세 디자인 용역 (예시)
  3. 응용 디자인 용역 (예시)
  4. 최종 디자인(메뉴얼)용역 보고서 등 관련 서류 (예시)
- ② 갑과 을은 “○○ 디자인 개발 용역”을 계약함에 있어 제1항의 각호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디자인 개발 용역 특수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특수조건”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계약서”에 의하되, 만일 이 “표준 계약”과 “특수 조건”의 내용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상충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특수 조건”에 정하는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5 조 (대금 지급)

- ① 갑은 본 계약의 이행의 대가로 아래와 같이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
(V.A.T 10% 별도 금액임)	

- 2. 지급방법
  - 계약금 :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 지급
  - 선 금(을의 요청시) : 착수 후 14일 이내 계약금액의 50% 이내 지급
  - 중도금(기성금) : 진도율에 따라 계약금액의 70%이내에서 지급
  - 잔금(준공금) : 디자인 용역(메뉴얼 등) 완료 및 디자인결과물 검수완료 후 14일 이내에 계약금, 선금, 중도금을 제외한 잔금
- 3. 갑의 요구에 의거 계약서에 없는 “○○ 디자인 용역” 성과품에 따라 시제품을 제작할 때는 갑이 제품의 제작비용은 을에게 별도 지급한다.

제 6 조 (계약 내용의 변경 · 추가)

- ① 갑과 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갑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 추가 ·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기명 ·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 ② 갑의 요구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여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 디자인 용역”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인원 투입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 7 조 (디자인 성과물 완료 전 부분 사용)

갑은 본 계약이 완료되기 전 디자인 성과물을 사용하려면, 을과 사전 합의하여 기성 용역 또는 미완성 결과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제 8 조 (지식재산권 귀속 등)

- ① 당해 계약에 따른 디자인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 · 수익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 · 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 ④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갑에 귀속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에게 디자인결과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을은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을은 갑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을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을은 갑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디자인결과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 9 조 (일반적 손해)

- ① 을은 계약의 수행 중 디자인결과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갑이 부담으로 한다.

- ② 검수 후 인수한 디자인결과물에 대한 손해는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의 관리와 지시에 따라 단계별로 제작한 디자인 제작물이 갑의 목적에 맞지 않게 제작되어 디자인의 제작업 등이 불가피한 경우 향후 소요 될 비용중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을이 부담하고, 갑과 을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비율대로 비용을 분담한다.

제 10 조 (부당한 용역계약 취소 금지)

- ① 갑은 디자인 용역 계약을 한 후 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 디자인 용역” 성과물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② 갑은 을로부터 디자인 용역 최종 성과물을 인수(납품)받은 때에는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부당한 계약금액 감액의 금지)

- ①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디자인용역”을 수행할 때 정한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각호에 의한다.

제 12 조 (권리 · 의무의 양도 금지)

갑과 을은 서면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디자인 개발 계약서” 또는 “특수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구두상의 통지, 지시 등)

을은 갑으로부터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구두상의 통지, 요구, 지시에 의해 디자인 개발 용역을 추가, 변경, 삭제 등의 이행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전자문서 등 회신, 승인 등의 서류를 보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14 조 (디자인 개발에 따른 수익 배분)

갑과 을은 “○○ 디자인 용역”과 관련하여 개발로 인한 수익 배분과 관련하여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사전에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15 조 (비밀의 유지)

- ① 갑과 을은 “디자인 개발 계약” 또는 “특수 조건”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다른 디자인에 대한 기획안 등 업무상 ·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 · 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 16 조 (자료의 제공 및 반환)

- ① 갑은 을이 “○○ 디자인 용역” 수행 상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제, 유출하거나 본 계약 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을은 본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 해제된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 받은 제1항의 모든 자료를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 17 조 (용역의 완료검사 및 인수)

- ① 갑은 을로부터 본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 디자인 용역”의 최종 성과물 및 관련 보고서, 문서 등을 작성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갑은 ①항에 의거 을로부터 완료검사를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을의 요청일로부터 이상이 없을 시에는 14일 이내에 최종성과품의 완료검사를 완료하고 최종 성과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 ③ 갑이 ①항에 의거 완료검사를 진행하였는데, 을의 최종성과품이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갑”은 “○○ 디자인 용역”의 수정 및 보완 또는 재개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지체 없이 수행하고 갑에게 재 완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8 조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 또는 특수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입취소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을이 어음 ·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 회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을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5. 을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본 계약 또는 특수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할 경우
  6. 을이 “○○ 디자인의 용역” 등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 ②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또는 특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 또는 특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의 위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을의 “○○ 디자인 용역”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디자인 용역을 거부하거나 용역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디자인 용역 협정서 (안)

- 4. 을의 인원·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③ 갑과 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 ⑤ 갑과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 19 조 (지체상금)

- ① 을이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00 디자인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지체일수에 계약금액의 (2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 ③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00 디자인 용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디자인 용역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수행이 중단된 경우
  3. 을의 부도 등으로 연대 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갑이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4. 을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갑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 이내에 한함)
  5.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계약기간 내에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 시 을의 디자인 용역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검사에 따른 수정요구를 을에게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디자인 용역을 완료한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간의 일부부터 검사 (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제 20 조 (기타)

본 계약을 증빙하기 위하여 계약시 원본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10. . . . .

**갑**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협약 건명 : 000 디자인 용역

협약용역금액 : 일금 원정 ( )

위 협약 건에 대하여 〇〇〇을 “갑” (이하 “갑”이라 한다)이라 하고, 〇〇〇을 “을” (이하 “을”이라 한다)이라 칭하여 다음 각 항에 대하여 협정한다.

### 제 1 조 (목적)

이 협정은 갑이 의뢰한 “00 디자인용역(개발)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협정 업무를 이행하여 갑에게 공급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하에 협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조 (용역기간)

을은 갑이 의뢰한 “000디자인 용역”성과물을 협정 기간 〇연〇월〇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 조 (디자인 추가 및 비용추가)

갑은 을에 대하여 동일 디자인용역의 3% 범위내의 디자인 품목 추가에 대해 무상으로 공급을 요청 할 수 있고, 3% 범위를 초과 시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갑은 을에게 추가로 비용을 지불한다.

### 제 4 조 (용역비 지불)

갑은 을이 제출한 “000 디자인 최종 성과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성과물을 완료 검수하여 인수하고 을의 청구에 의하여 용역비를 지불한다. 다만, 갑은 을의 디자인 용역의 원활한 완수를 위하여 선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불할 수 있다.

### 제 5 조 (지체 상금 및 손해배상)

- ① 을은 본 협약기간 내에 디자인 성과물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협약금액 1000분의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과 갑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협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을은 디자인 용역수행 과정에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와 손해 또는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갑의 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 또는 하자에 대해서는 갑으로 책임을 이행하며,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경우 협의에 의하여 부담비율을 정한다.

### 제 6 조 (비밀 보장)

을은 “000 디자인 용역”을 통하여 알게 되는 갑의 모든 자료를 본 협약 이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 7 조 (디자인 개발에 따른 수익 배분)

갑과 을은 “00 디자인 용역”과 관련하여 개발(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복제권, 편집저작권 등 포함)로 인한 수익 또는 인센티브 분배에 관련하여 상호 사전에 당사자 간 협의하여 비율을 정할 수 있다.

### 제 8 조 (협약 내용의 변경·추가, 중지)

갑과 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협정변경이 필요하거나 갑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추가·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협약의 내용과 범위”를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 제 9 조 (기타사항의 결정)

갑과 을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협약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 10 조 (협약 증명)

본 협약을 증빙하기 위하여 계약시 원본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하고 갑과 을은 각 1통씩 소지한다.

2010. . . . .

**갑**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발행일\_ 2010.10

문의처\_ 한국디자인진흥원 정책기획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1동 탄천우로 170번지 코리아디자인센터

T| 031.780.2033

E| cherish@kidp.or.kr

디자인\_ 우정민



